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29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 백승아·최기상·김남근

이훈기 · 정진욱 · 오세희

김기표 · 김용만 · 박희승

강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,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·확인 의무,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박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있음.

또한,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관하여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 인하고 준비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인솔자 인 교사의 책임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,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8조의2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·확인·이행하였으며,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학교장, 인솔교사 및 제10조의4에 따른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4(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) ① 학교장은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(이하 "안전요원"이라한다)을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배치할 수 있다.
 - ② 학교장은 시설의 안전위생, 유해환경 인접 여부,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학교 밖 교육활동이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답사(이하 "사전답사"라 한다)가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

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의 자격기준·업무·배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	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
리 지침 등) ① ~ ④ (생 략)	리 지침 등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8조의2에 따른 교육활동
	<u>안전대책을 점검·확인·이행</u>
	하였으며, 제4항에 따른 안전조
	치를 취한 학교장, 인솔교사 및
	제10조의4에 따른 교육활동의
	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
	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	로 인한 것이 아니면 교육활동
	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
	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
	임을 지지 아니한다.
<u><신 설></u>	제10조의4(학교 밖 교육활동에
	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)
	① 학교장은 안전한 학교 밖
	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	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의 안
	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
	람(이하 "안전요원"이라 한다)
	을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배치
	<u>할 수 있다.</u>

- ② 학교장은 시설의 안전위생, 유해환경 인접 여부,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답사(이 하 "사전답사"라 한다)가 필요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 1항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에 필요 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의 자격기준·업무·배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